의안번호	제 265 호
의 결 연 월 일	2015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15년 10월 2일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65

제출연월일: 2015. 10. 2.
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여성공무원에게 생리기마다 무급으로 부여하는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고,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태아보호와 장기근속한 공무원의 자기계발 시간 마련 및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여성공무원에게 부여하는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유급화(안 제19조제2항)
나.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휴가 5일 신설(안 제19조제3항)
다. 장기근속 지방공무원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신설(안 제19조제7항)
  1)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: 10일
  2)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: 10일
  3) 재직기간 30년 이상: 20일
라.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의 특별휴가 1일 신설(안 제19조제8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별첨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라. 기 타
  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  2) 입법예고(2015. 8. 21. ~ 2015. 9. 10.): 검토의견과 같음
  3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 4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  5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”를 “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”로 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여자공무원”을 “여성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,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.

제19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제7조제2항을 따른다.

1.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: 10일
2.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: 10일
3. 재직기간 30년 이상: 20일

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기재직휴가 적용의 특례)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당시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를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	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제19조(특별휴가) ① (생 략)	제19조(특별휴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.	② 여성공무원----------. <단서 삭제>
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.	③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,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.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⑦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제7조제2항을 따른다. 1.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: 10일 2.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: 10일 3. 재직기간 30년 이상: 20일
<신 설>	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관계법령

□ **지방공무원법**[시행 2015.5.18.] [법률 제13292호, 2015.5.18]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**지방공무원 복무규정**[시행 2014.11.19.] [대통령령 제25751호, 2014.11.19]

제7조(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, 휴직기간·정직기간·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.

1. 임신·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(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,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)
2.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
3.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

제7조의3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~ ⑥ (생 략)

입법예고 결과 검토 의견

1. 입법예고 기간: 2015. 8. 21.(금) ~ 9. 10.(목)
2. 접수 의견 수: 3건
3. 의견 내용

개정안	의견조회	
	제출자	내용
제19조(특별휴가) ① ~ ⑥ (생 략) ⑦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2항을 따른다. 1.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: 10일 2.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: **10일** 3. 재직기간 30년 이상: 20일	1. 용암중 교육행정7급 이영선	o 공무원 입직후 20년 이상(30년미만)의 기간은 경력인정과 공직사회 기여도 부분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바, 10일의 특별휴가는 짧다고 생각함 o **10일에서 20일로 상향조정**
	2. 충주대림초 교육행정6급 김성래	o **재직기간 20년이상 30년미만: 10일에서 15~20일** - 사유는 임용연령상한폐지로 인하여 경력년수가 20년에서 30년 미만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한쪽에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
	3. 무극중 교육행정6급 안경애	o **재직기간 20년이상 30년미만: 20일** - 장기재직에 따른 휴가라는 취지를 볼 때 20년 미만이 10일이므로 20년 이상은 그보다 많은 20일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봄. - 신규임용자의 나이가 늦어지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30년 이상 재직하여 휴가 혜택을 얻을 가능성이 적을 수 있으므로 20년 이상일 때 더 많은 휴가를 부여한다면 더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봄

4. 검토 의견: 미반영

가. 최근 신규임용자의 고령화 추세로 30년 이상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감소할 수 있으나, 정년 연장 등 근무조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할 사안임

나. 개정안은 도단위 교육청 중 가장 높은 수준임

다. 장기재직휴가 운영 취지에 맞게 자기계발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3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만 2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